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 6. 27.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 가. 제출일자 : 2017년 6월 7일
-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 다. 회부일자 : 2017년 6월 9일
- 라. 상정일자 : 제201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위원회(2017. 6. 2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정국장 서종석)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에서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된 사항 반영 및 주요 사업 투자심사, 재정공시를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유사·중복 위원회의 증가 방지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영등포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내용 추가(안 제7조)
 - 주요사업 투자심의에 관한 사항
 -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최광목)

-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서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 주요내용은
 - 안 제7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기능 중, 주요사업 투자심사,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과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추가 하였고,
 - 기타 조문의 개정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임.
- 검토결과, 「지방재정법」 제32조의3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두되, 민간위원 및 성별의 비율, 임기 등을 제외하고, 기타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이는 유사·중복 위원회의 증가 방지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 하다고 보며, 상위법 저촉이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235 호
----------	---------

제출연월일 : 2017. 6.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유사한 위원회의 증가 방지 및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주요사업 투자심사, 재정공시,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추가 (안 제7조)
(당초) 6개 항목 심의 ➡ (변경) 9개 항목 심의
- 주요사업 투자심의
 -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
 -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
-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 2)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3)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 4) 인권영향평가 : 원안동의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2017.4.20. ~ 5.10. / 20일간) 결과 :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2조의10”을 “제32조의11”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 각 호와”를 “뜻은 다음과”로 한다.

제3조 중 “관리에 관하여”를 “관리에”로, “조례가”를 “조례에서”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주요사업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7.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8.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제9조제1항제1호 중 “배우자이었던”을 “배우자였던”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이”를 “구청장은 위원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아니한”을 “않는”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20조 단서 중 “공공기관에게”를 “공공기관에”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용도의 사용금지 등)”을 “(용도 외 사용금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사용하여”를 “사용해”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5조 중 “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공무원에게”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보조사업”을 “구청장은 보조사업”으로, “제8조”를 “제7조”로

한다.

제28조제2항제7호 중 “구청장이 지방보조사업”을 “지방보조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아니하는”을 “않은”으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본문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 4. (생략)

②, ③ (생략)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 2. (생략)

3.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분과위원회) ① (생략)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② (생략)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

-----.

1. ----- 배우자였던

2. ~ 4. (현행과 같음)

②,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

--.

1. , 2. (현행과 같음)

3. -----

않는 -----

제11조(분과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필요 -----

-----.

제1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 ⑥ (생략)

제16조(보조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 6. (생략)

② (생략)

제18조(교부조건) ① (생략)

②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0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

없으면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보조신청) ① -----

-----.

1. 2. (현행과 같음)

3. ----- 필요한 -----

4.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교부조건) ① (현행과 같음)

② -----

----- 범위 -----
-----.

제20조(교부방법) -----

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게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 연도 만료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공공기관에-----

-----.

제21조(용도의 사용금지 등) ① 지방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 따른-----

----- 사용해-----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4조(정산검사) ① (생략)

제24조(정산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② -----

----- 따라 -----
-----.

제25조(감독 등)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제25조(감독 등) -----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7조(성과평가) ① (생략)

②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④ (생략)

제28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략)

7. 구청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 ⑤ (생략)

⑥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

공무원에게

제27조(성과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보조사업

제7조

③, ④ (현행과 같음)

제28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1. ~ 6. (현행과 같음)

7. 지방보조사업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